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정수대전은 2000년 1회를 시작으로 2021년 22회까지 개최해 온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구미시 대표 예술대전으로 예술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음.
- 지역의 예술활동 저변 확대 및 우수한 예술작품 향유 기회 제공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행사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한민국정수대전

○ 대한민국 정수미술대전

- 부 문 :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조소, 공예, 민화
- 자 격 : 만 18세 이상
- 내 용 : 창의적이고 순수한 국내외 공모전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

○ 대한민국 정수서예·문인화대전

- 부 문 : 한글, 한문, 문인화, 전·서각, 현대캘리그래피
- 자 격 : 만 18세 이상
- 내 용 : 서예발전에 기여하는 창작 및 임서 작품

○ 대한민국 정수사진대전

- 부 문 : 창작사진(자유작품)
- 자 격 : 만 18세 이상
- 내 용 : 자유작품으로 국내외 공모전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필요성)

- 민간위탁을 통하여 행사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발전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대한민국정수대전 총괄 운영
- 대한민국정수대전 대회 홍보, 요강 제작 및 배부
- 대한민국정수대전 작품 접수 및 심사 진행
(대한민국 정수미술대전, 서예·문인화대전, 사진대전)
- 대한민국정수대전 시상 및 작품전시 등

라. 위탁기간 : 1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바. 소요예산 : 260,000천원

(단위 : 천원)

전체예산	행사장조성비	대회운영비	인건비(수당)
260,000	46,000	133,900	80,100

대한민국정수대전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대한민국정수대전 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
- 관련법령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구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액(원)
행사장 구성비	작품걸이대(MDF)설치및철거	11,000,000원×1식=11,000,000원	11,000,000
	시상식장 조성(무대,음향,영상 등)	6,000,000원×1식=6,000,000원	6,000,000
	작품운송차량임차료(무진동특수차)	14,000,000원×1식=14,000,000원	14,000,000
	행사 촬영료	4,000,000원×1식=4,000,000원	4,000,000
	작품전문D/P수당	200,000원×10명×2일=4,000,000원	4,000,000
	청소 및 방역	2,000,000원×1식=2,000,000원	2,000,000
	온라인 전시회	1,000,000원×1식=1,000,000원	1,000,000
	행사용품(코사지,꽃다발 등)	2,000,000원×1식=2,000,000원	2,000,000
	사회 및 의전도우미	2,000,000원×1식=2,000,000원	2,000,000
	소 계		46,000,000
대회 운영비	우편요금	400원×22,000부=8,800,000원	8,800,000
	대회물품구입	7,000,000원×1식=7,000,000원	7,000,000
	송금수수료	1,000원×700명=700,000원	700,000
	현수막,배너등 제작	13,000,000원×1식=13,000,000원	13,000,000
	초청장 인쇄	700원×2,000부=1,400,000원	1,400,000
	대전 홍보	6,000,000원×1식=6,000,000원	6,000,000
	개최요강 제작	700원×15,000부=10,500,000원	10,500,000
	출품원서 제작	700원×15,000부=10,500,000원	10,500,000
	요강 포스터디자인	1,500,000원×1식=1,500,000원	1,500,000
	포스터 제작	1,200원×2,000부=2,400,000원	2,400,000
	요강발송용 대봉투	380원×5,000부=1,900,000원	1,900,000
	미술대전 도록제작	30,000원×600부=18,000,000원	18,000,000
	서예문인화대전 도록제작	30,000원×600부=18,000,000원	18,000,000
	사진대전 도록제작	30,000원×600부=18,000,000원	18,000,000
	도록용발송박스	4,000원×1,800개=7,200,000원	7,200,000
	바인더, 상장 등 인쇄물 제작	9,000,000원×1식=9,000,000원	9,000,000
	소 계		133,900,000
인건비 (수당)	운영위원 수당	300,000원×30명=9,000,000원	9,000,000
	심사위원 수당	300,000원×70명=21,000,000원	21,000,000
	접수 및 심사보조요원 수당	80,000원×120명=9,600,000원	9,600,000
	행사보조요원 수당	80,000원×190명=15,200,000원	15,200,000
	행사총괄	2,300,000원×1명×3월=6,900,000원	6,900,000
	행사총괄보조	2,300,000원×1명×8월=18,400,000원	18,400,000
	소 계		80,100,000
	합 계		260,00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a)	출품료, 후원금	80,000,000	80,000,000	80,000,000	240,000,000
세출(b)	민간위탁금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780,000,000
□ 총 비용(a-b)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540,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구분					
도 비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300,000,000
시 비		160,000,000	160,000,000	160,000,000	480,000,000
합 계		260,000,000	260,000,000	260,000,000	780,00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출품료, 후원금 및 정수대전 운영비 변경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유영민(☎6603)

관계법령

□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박정희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자료 수집·발간
3.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
4. 박정희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
5. 박정희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기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경상북도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학술)단체를 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동의를 받거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 및 위탁사무의 성과 보고서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의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김영철
	담 당	김현주
	담 당 자	유영민 (480-6603)